

# 예산수립특별위원회 규정

제정 : 2023년 6월 30일(이사회)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본 규정은 학회 운영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, 시행세칙 제26조에 근거한 차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예산수립특별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구성과 활동, 절차를 규정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 구성

- 제 2 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. ①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② 부위원장은 총무담당 부회장으로 한다. ③ 위원으로는 총무이사, 현 회장이 추천하는 임원 1명, 사무국장으로 한다.
- 제 3 조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(이하 학회장)이 매년 총회가 개최되는 30일전까지 위촉한다.
- 제 4 조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차년도 사업계획(안)을 반영하여 예산(안)을 최종 수립한다.
- 제 5 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 3 장 위원회 운영

- 제 6 조 차년도 예산(안)이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도록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1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안한다.
- 제 7 조 각 부문별로 사업계획 및 필요 예산 계획을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.
- 제 8 조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하며,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예산 수립의 절차

- 제 9 조 위원회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실적, 기타 학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, 각 부문별 사업계획 및 필요 예산이 제안된 경우를 반영하여 항목별 차년도 예산을 수립한다.
- 제 10 조 위원회는 고정 지출비에 해당하는 차년도 인건비를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 후 예산 수립에 반영해야 하며, 인건비를 결정할 때는 학회 운영의 건전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.
- 제 11 조 예산 항목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며, 각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.
- 제 12 조 차년도 예산(안) 수립을 위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